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감면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을 축소(안 제4조)

- 감면율 : (현행) 면제 → (개정) 100분의 75

○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휴업, 폐업 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산업단지 감면과의 조세 형평을 감안하여 감면을 축소(안 제5조)

- 감면율 : (현행) 면제 → (개정) 100분의 75

- 휴 업 : (현행) 범위 없음 → (개정)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

- 폐 업 : (현행) 범위 없음 → (개정) 폐업한 날부터 3개월 경과

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국세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축소(안 제7조)

- (현행) 15년간 면제 → (개정) 7년간 면제 + 3년간 100분의 50

- (현행) 10년간 면제 → (개정) 5년간 100분의 50 + 3년간 100분의 30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이 이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율만 조례로 규정(안 제11조)

○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,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 신설(안 제19조)

-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에만 적용

4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상위법에서 열거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정하고 있던 규정들을 삭제하고, 상위법 관련 조문만 인용 정비하며,

○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추정규정을 해당용도 사용기한과 처분가능 기한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.

○ 또한,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감면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축소조정하고,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